

의안번호	제29호
의결연월일	2008. 07. . (제 회)

의결사항

## 거창군수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강창남의원 외1
발의연월일	2008. 07. 07.

# 거창군수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008~29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	2008. 7. 7.
발 의 자	강창남의원외1

## 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,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정함(안 제2조)

○ 기관운영업무추진비 ,시책추진업무추진비 ,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

다.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
○ 매 반기 집행실적을 다음반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공개

라. 공개내용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
○ 집행일자, 집행내용, 집행금액 등을 공개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4조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그 밖에

(1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 거창군수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,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개 및 지출과 관련된 군수와 의장의 업무추진비라 함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서상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,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를 말한다.

제3조(공개방법)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 반기 집행실적을 다음반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거창군과 거창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한다.

제4조(공개내용)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사생활보호차원에서 개인 또는 법인·단체 명의를 제외한 집행일자·집행내용·집행금액으로 공개한다.

제5조(지출기준) 업무추진비는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(행정안전부령)」에 따라 지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